

제296회 정례회
'10. 12. 7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10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위험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,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전문가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목적(안 제1조)
-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바
- 도내 위험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,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전문가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써
-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 제1조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를 “위원회”로 약칭하는 내용과 제3조제3항제4호 등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검 토 수정 안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·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50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<u>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 관리위원회</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~③(생략) 1.~2.(생략) 4.(생략)</p> <p>제4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·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50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<u>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~③(원안과 같음) 1.~2.(원안과 같음) <u>3.(원안과 같음)</u></p> <p>제4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